#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20047 |
|---|---|

발의연월일 : 2026. 7. 20.

발 의 자 : 박용갑・김병주・조인철
김준혁・정준호・어기구
소병훈・서영교・서영석
이건태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 각각 100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에 따르면, 2024년 우리나라 정당의 당원 수는 1,128만 4,730명으로 2000년보다 1.85배 증가하였고,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은 2만 1,378명에서 251만 6,506명으로 117배 이상 증가하였음. 그럼에도 유급사무직원 수는 거의 변동이 없어 당원 관리와 정당 활동 지원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한 실정임.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당비 납부 당원이 2000년 6,328명에서 2024년 131만 766명으로 207배 증가하였으나 유급사무직원은 147명에서 190명으로 증가하는 데 그쳐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6,899명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힘도 당비 납부 당원이 99.6배 증가한

반면 유급사무직원은 오히려 감소하여 유급사무직원 1인당 권리당원이 약 5,848명에 이르는 등 정당 조직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임.

또한 최근 지역당 설치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지역당 운영과 당원 활동을 지원할 조직과 인력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당원이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에 정당의 규모와 당비 납부 당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도당 및 지역당에도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원이 예산 편성 등 정당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및 제38조의2).

법률 제 호

#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중앙당에는 1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를 “정당의 규모, 당비납부 당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둔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당원의 정당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당원참여예산 등의 운영) ①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당원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정당은 제1항에 따라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원참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0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 ----------정당의 규모, 당비납부 당원의 수 및 지역조직의 운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둔다. 이 경우 시·도당 및 지역당의 원활한 운영과 당원의 정당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신 설> | ⑤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 <신 설> | 제38조의2(당원참여예산 등의 운영) ① 정당은 당헌·당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당원참여예산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 | |
|---|---|
| | ② 정당은 제1항에 따라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할 경우 당원참예산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위원회 등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둘 수 있다. |